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Tel. 02-393-9085 Fax. 02-363-9085 E-mail. corights@jinbo.net

문서번호 : 04-0615-1

발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엇갈린 선고로 법적용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미 설립 초기부터 수 건에 걸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4. 이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인권의 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후에는 진정서 접수 및 정책국장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6. 많은 참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04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보고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이미 진정한 바 있는 병역거부자 입장 발표 / 병역거부자 중 1인
 - 기자회견문 낭독 / 효림 스님 (연대회의 공동대표)
 - 질의·응답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및 정책국장 면담
- 기타)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 진행

☎ 문의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016-221-7451)
최정민 (연대회의, 017-311-4245)

<끝>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도 입법화에 나서라!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선고 후 한국사회에는 또 다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는 그 인권상황이 사회일반에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939년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최초로 일제에 의해 처벌받은 이래 50년이 넘는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전과자가 양산되어 온 심각한 인권현안이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민주화되고 발전했지만 유독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이단과 병역기피의 굴레를 쓰고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지난 50년 이상 유예되어 왔던 것이다. 2001년 최초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은 일정 부분 향상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2월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과 이번 5월의 무죄선고, 그리고 뒤이은 하급심 법원의 유죄선고, 구속과 불구속 등 엇갈리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최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6, 7월 중으로 선고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대체복무제도 입법화를 시도하려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었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나 17대 국회는 이러한 인권현실을 눈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본다는 것 이상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자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인권을 돌보는 임무를 방기한다면 더욱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미루지 말고 즉각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4. 6. 1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 빌딩 5층
E-mail. peace@jinbo.net | Tel. (02) 393-9085 | Fax. (02) 363-9085

문서번호 040616-2

수 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내 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 진정서(총 5매)

참 조 인권정책국

날 짜 2004. 6. 16

1. 안녕하십니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를
요구하고자 불임과 같이 진정합니다.

불임: 진정서 (1부- 총 4매)

담당: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 017-311-4245)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016-221-7451)

<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진 정 서

○ 주문

1.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여 주십시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도록 해당 정부부처에 권고해 주십시오.

○ 진정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 진정이유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원의 무죄 판결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어느 때보다 크게 일고 있다. 더구나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엇갈린 선고로 법적용의 혼선마저 빚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국가안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권리보다는 의무가 보다 강조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1만 여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아왔다. 현재에도 매년 700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 또한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무를 위해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희생되는 상황은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인권적인 접근임에 분명하다. 이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체복무제도이다. 현대의 국방의 개념은 더 이상 군사적 물리력 수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히려 환경문제, 각종재난, 사회안전망 미비, 국가 간 산업경쟁 등 군사적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국방의 개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20만 명에 가까운 대체복무인력을 통해 이러한 광의의 국방의 개념을 현실 속에 적용해 온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4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한 해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행 병역제도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인력 운용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검증도 되지 않은 병역기피 확산이나 형평성 논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심사할지 등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도가 바로 권리와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이자, 우리가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기대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 ‘인권’ 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조 제1항)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이자 그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와 관련된 진정접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매번 보류 혹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이미 거친 바 있으며,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입장을 인권의 기준에 입각하여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할 것과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도록 해당정부부처에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 근거

가. 관련 국내법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1항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관련 국제법 및 결의안

○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 한국정부 1999년 4월 10일 비준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유엔인권이사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 22호(U.N. Hun. Rts. Comm., General Comment 22[48](art.18), at para. 11.)

○ 1978/1987/1989/1993/1995/1998/2000/2002/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목록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 개선 (2001. 11. 26)
 -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 요청
 - 2002. 10. 19. 국가인권위 법무부에 종교적 집회 허용 권고
 - 2003. 6. 30. 법무부 행정시설 내에서 종교집회 허용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 (2001. 12. 17)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
 - 답변 없음
3. 양심의 자유 보장 요구 (2002. 3. 12)
 - 진정인은 1972년, 1975년 2회에 걸쳐 투옥된 적이 있음.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감옥에 있는 1,600여명의 병역거부자 구제를 진정
 - 2002. 10. 7.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각하.
4. 헌법재판소에 의견표명 요청 (2002. 4. 11)
 -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
 - 답변 없음
5. 양심의 자유 침해 (유호근, 2002. 7. 9)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
 - 답변 없음
6. 양심의 자유 침해 (임치윤, 2002. 9. 10)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
 - 답변 없음
7. 양심의 자유 침해 (나동혁, 2002. 9. 16)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
 - 답변 없음
8. 양심의 자유 침해 (김도형, 2003. 4. 30)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

- 답변 없음

9. 양심의 자유 침해 (임태훈, 2003. 7. 22)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호소

- 답변 없음

10. 군영창의 도서검열 행위의 부당성 및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철폐

- 군 영창에서 벌어지는 편지와 도서 검열 행위가 인권 침해이며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탄압이라는 점

- 답변 없음

11. 강철민씨 징계 부당 (2004. 2. 20)

- 강철민 씨가 '파병반대' 내용을 담은 신문광고를 내려다 징벌방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부당성

- 본인이 징계를 받아들였으므로 각하

12. 부산지방병무청의 해직권고 부당 (2004. 5. 18)

-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해직권고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

- 답변 없음